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

455 Golden Gate Avenue
San Francisco, CA
94102-3688

전화번호 415-865-4200

팩스번호 415-865-4205

courts.ca.gov

사실관계 설명서

2026년 2월

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강화(CARE) 법

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강화(CARE) 법(2022년 제 319 장)은 정신분열증이나 기타 정신병적 장애, 정신병적 특징을 동반한 제 1형 양극성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치료, 주거 지원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사 법원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절차는 피신청인을 대신하여 청원이 제기될 때 시작되며, 덜 제한적인 다른 대안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CARE 협약 또는 CARE 보험의 수립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약 및 보험은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하면서 피신청인의 권리, 존엄성 및 자율성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ARE 법은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카운티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58개 모든 카운티가 CARE 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요

CARE 법은 특정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정신건강 서비스와 책임감을 제공합니다. 목적은 최대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법원 승인 CARE 협약 또는 법원 명령 CARE 보험을 통해 제한적인 후견 또는 수감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청원이 제출되고 CARE 법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은 카운티 행동건강관리국과 협력하여 CARE 협약을 수립합니다.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CARE 보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피신청인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지원을 통해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Lanterman-Petris-Short(LPS) 법과 달리, CARE 법은 구금 시설이나 강제 약물 투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 및 사회복지부(CalHHS)는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 보건료서비스국(DHCS), 카운티 및 시와 협력하여 CARE 법의 시행을 조정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CARE 피신청인을 우선으로 하여 행동 건강 및 주거 지원 서비스에 상당한 자금을 할당했습니다.

CARE 법 절차

신청인과 피신청인

CARE 법 절차는 피신청인을 대신하여 청원이 제기될 때 시작됩니다. 제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성인을 포함합니다.

- 피신청인이 함께 거주하는 사람
-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 조부모 또는 피신청인에 대해 부모와 같은¹ 지위에 있는 기타 개인
- 피신청인이 입원한 병원의 원장, 복지 및 기관법 제 5150 조 또는 제 5250 조에 따른 입원 포함²
- 이전 30 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행동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현재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 또는 자선 기관, 시설 또는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기관의 책임자
- 이전 30 일 이내에 피신청인의 정신 질환 치료를 감독하거나 치료한, 면허를 소지한 행동 건강 전문가
- 피신청인과 3반복적으로 교류한⁴ 초기 대응인
- 피신청인이 현재 있거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카운티의 공공 후견인 또는 공공 보호자
- 피신청인이 거주하거나 발견된 카운티의 카운티 행동건강관리국 책임자
- 피신청인이 거주하거나 발견된 카운티의 카운티 성인보호서비스 책임자
- 이전 30 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제공 중인 캘리포니아 원주민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부족 행동 건강 부서의 책임자
- 이전 30 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출석한 캘리포니아 부족 법원 판사

¹ 부모의 역할이나 책임을 수행할 법적 책임이 있는 개인.

² 비자발적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개인은 개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또는 비자발적 치료를 받고 있는 카운티의 카운티 행동건강관리국으로 의뢰될 수도 있습니다.

³ 보안관, 소방관, 구급대원, 응급 의료 기술자, 이동 위기 대응 요원 또는 노숙자 봉사활동가가 포함됩니다.

⁴ 다수의 체포, 다수의 구금, 복지 및 기관법 제 5150 조에 따른 이송, 피신청인을 자발적 치료에 참여시키기 위한 다수의 시도, 또는 피신청인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타 반복적인 노력이 포함됩니다.

- 피신청인⁵

CARE 법 절차의 자격에 해당하려면 피신청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8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재 심각한 정신 장애를 겪고 있거나 정신분열증 스펙트럼, 기타 정신병적 장애(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정신분열양상장애 등) 또는 정신병적 특징을 동반한 제 1 형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중독과 관련된 정신병 제외).⁶
- 진행 중인 자발적 치료에서 임상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 감독 없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가능성이 낮으며,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중대한 장애 또는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재발이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해야 합니다.
- CARE 보험 또는 CARE 협약에 참여하는 것이 회복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적인 대안인 상황이어야 합니다.
- CARE 협약 또는 보험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CARE 법 절차

청원 및 본안 심리

법원에 청원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신청인이 CARE 법 서비스 대상자이거나 자격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법원은 모든 CARE 법 절차에서 피신청인을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⁷

신청인이 카운티 행동건강관리국 책임자 또는 그 지정인이 아닌 경우, 카운티 행동건강관리국은 피신청인이 CARE 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30 법정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⁵ CARE 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위기관 또는 병원 책임자 및 기타 전문가는 그 지정인에게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⁶ 자격에는 의학적 질환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또는 특성상 주로 정신병적이지 않은 장애(예: 정신적 외상성 뇌손상, 자폐증, 치매 또는 신경학적 질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⁷ CARE 법은 피신청인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법원이 자격이 있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를 통한 변호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공 변호인 또는 기타 변호인이 피신청인을 변호하도록 지정됩니다. 법원은 신청인 및 기타 관련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검토한 후, 법원이 피신청인이 CARE 법 서비스 대상자이거나 자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4 일 이내에 최초 출석을 진행합니다.⁸ 피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지원인 및 통역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후 본안 심리가 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카운티 행동건강관리국이 피신청인과 그 변호인, 피신청인의 지원인과 협력하여 (1) 피신청인을 자발적인 행동 건강 치료에 참여시키거나 (2) CARE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법원은 14 일 이내에 사건 관리 심리를 지정합니다.

사건 관리 심리 및 CARE 협약 또는 임상 평가

사건 관리 심리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협약 체결 여부를 평가합니다. 협약이 체결되고 법원이 협약을 승인하는 경우, 법원은 60 일 이내에 진행 심리를 지정합니다.⁹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체결 가능성이 낮은 경우, 법원은 카운티 행동건강보건국에 해당 개인의 임상 평가를 수행하도록 명령하고 21 일 이내에 임상 평가 심리를 지정합니다.¹⁰ 법원은 협약 기간 내내 추가 진행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상 평가 및 CARE 보험

임상 평가를 통해 자격이 확인되면, 카운티 행동건강보건국, 피신청인, 변호인, 지원인이 공동으로 CARE 보험을 수립합니다. CARE 보험 검토 심리는 14 일 이내에 진행됩니다.¹¹

법원은 제안을 검토하고 회복 및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소를 채택합니다. CARE 보험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행동 건강 서비스
- 의학적으로 필요한 안정화 약물
- 주거 자원

⁸ 카운티 행동건강관리국은 법원이 정한 초기 심리 날짜를 피신청인과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행동건강관리국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경우, 법원은 행동건강관리국이 해당 개인과 계속 협력하고 해당 개인을 참여시키며 해당 개인이 자발적 서비스에 등록하도록 최대 30 일을 추가로 요청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⁹ 또한 법원은 CARE 협약 조건을 수정하고 수정한 협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¹⁰ 임상 평가는 면허가 있는 행동 건강 전문가를 통해 진행됩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의 변호인에게 평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더 긴 연장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과 카운티 행동건강보건국의 규정에 따라 심리는 최대 14 일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¹¹ CARE 보험에는 CARE 협약과 동일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카운티 행동건강보건국 또는 피신청인 또는 양측 모두 제안된 CARE 보험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보증 소득/주정부 추가 지급(SSI/SSP), 이민자를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CAPI), CalWORKs, 캘리포니아 식품 지원 프로그램, 재택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CalFresh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
- 빈곤한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카운티 '최후의 수단' 서비스
- 피신청인과 재정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추가로 합의한 서비스

CARE 보험에 대한 법원의 승인으로 1년간의 CARE 절차가 시작됩니다. CARE 협약 및 보험은 모두 상호 합의에 따라 또는 심리 후 법원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 검토 심리

1년 내내 법원은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상황 검토 심리를 진행합니다.¹² 카운티 행동건강보건국은¹³ 제공한 서비스, 피신청인이 제기한 문제, 조정 권고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이 변경되면 어느 당사자라도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ARE 보험 및 종료

11개월 차에 법원은 1년 상황 심리를 진행하여 법원 행동건강보건국의 보고서를 검토합니다.¹⁴ 피신청인은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을 최대 1년
- 자발적 종료 계획에 따라 종료

종료 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하고 12개월 차에 법원에서 검토합니다.¹⁵ 법원에서 피신청인이 보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참여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등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종료 후

종료 후에도 피신청인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주거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¹² 이러한 심리는 적어도 60일마다 진행됩니다.

¹³ 심리 최소 5일 전에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행동건강보건국은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변호인, 지원인(있는 경우)에게 보고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¹⁴ 심리 최소 5일 전에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정신건강보건국은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변호인, 지원인에게 보고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피신청인이 보고서 및 카운티 행동건강보건국의 증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¹⁵ 종료 계획은 정신과적 사전 의향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CARE 절차의 대안

CARE 법은 특정 대상(특정 정신 건강 질환이 있는 18 세 이상 인구)을 지원하지만, 법원 시스템과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대상자를 위한 추가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CARE 법에 자격이 없는 개인을 위한 다른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서비스 파트너십(FSP)
- 외래치료 지원제도(AOT)
- Lanterman-Petris-Short(LPS) 후견
- 위기 서비스(예: 워라인, 핫라인)
- 주거 또는 재활 프로그램
- 보험사를 통한 정신건강 혜택

카운티 행동건강보건국(care-act.org/library/county-website-directory/) 및 캘리포니아 법원의 셀프 도움말 가이드(selfhelp.courts.ca.gov/care-act/options-to-help)를 통해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기밀성

법원에 제출된 모든 보고서, 평가 및 건강 정보는 기밀입니다. CARE 법 절차에서 획득한 근거는 신청이 제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후속 법적 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ARE 법은 행동건강보건국과 제공자 간의 정보 공유를 허용하지만, 이러한 기록은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California Public Records Act)에 따른 요청에서 제외됩니다.

역할 및 책임

법원의 역할

사법관은 피신청인의 권리, 자율성, 의견을 보호하면서 CARE 법 사건을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식으로 감독합니다. 이들은 피신청인, 가족, 기관 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명령에서 피신청인을 위한 주거, 안정화 약물, 기타 지원을 우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카운티 및 지역 정부와 협력하여 CARE 시스템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보장합니다.¹⁶

¹⁶ 캘리포니아주 사법 행정 표준의 [표준 7.20](#)은 CARE 법원과 그 사법관의 고유한 역할에 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의 역할

사법위원회는 법원의 일정 절차 수립 지원, 양식 수립,¹⁷ 법원에 대한 기술 지원 제공, 판사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모든 법원에서 CARE 시행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DHCS 및 카운티 행동건강 책임자와 상담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의사 결정 지원
- 정신적 외상 인지 치료
- 편견 없애기
- 중증 행동건강 질환을 위한 근거 기반 치료 모델

또한 위원회는 정신 질환, 발달 장애, 고령 인구와 관련된 DHCS 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CalHHS 및 DHCS 의 역할

CalHHS 는 DHCS 및 사법위원회와 함께 CARE 시행을 조정합니다.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 및 카운티 협력 기관의 참여 촉진
- DHCS 교육 및 평가 지원
- 주거 수요 모니터링
- 봉사 및 소통 시행

DHCS 는 카운티 기관, 변호인, 지원인의 교육을 감독하고 데이터 수집 및 평가를 지원하며 CARE 시행 자금을 관리합니다.

재정 지원

법원은 CARE 법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해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¹⁸ 주 변호사 협회는 그 법률 서비스 신탁기금 위원회(Legal Services Trust Fund Commission)를 통해 법률 서비스 기관이나 공공 변호인의 피신청인 변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카운티는 기타 출처(예: Medi-Cal, 보험, 연방 또는 지역 자금)를 통해 지급되지 않는 서비스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피신청인은 Medi-Cal 수혜자이므로, 카운티는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약물 사용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¹⁷ 여기에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청원에 서명이 되어야 하고 피신청인이 CARE 기준을 충족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¹⁸ CARE 법은 피신청인이 상업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건강 보험에서 사건의 해당 행동건강 비용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CARE 법은 CARE 법 책임 기금(CARE Act Accountability Fund)을 설립하여 별금을 수령하고, 이를 DHCS가 매년 지방 정부에 재분배하여 노숙, 사법 개입, 입원 또는 후건의 위험이 있는 개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데이터 보고 및 수집

사법위원회는 DHCS와 논의하여 심리 법원이 CARE 데이터를 제출할 연간 인정을 수립했습니다.¹⁹ DHCS는 이 데이터를 집계 및 보고하며, 주 및 지방 협력 기관과 협의하여 연간 평가를 작성합니다.

또한 DHCS는 독립된 연구 기관과 계약하여 CARE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예비 및 최종 보고서를 출간합니다. 보고서에는 CARE 참여자의 비식별화된 인구통계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연락처:

care.act@jud.ca.gov

추가 자원

CARE 법 정보 courts.ca.gov/programs-initiatives/families-and-children/behavioral-health/adult-civil-mental-health

캘리포니아 보건 및 사회복지부 www.chhs.ca.gov/care-act/

¹⁹ 이 평가에는 제출된 청원 수, 청원 관련 최초 출석 수, 총 심리 횟수, 명령된 CARE 보험 및 승인된 CARE 협약 총 수, 기각된 청원의 총수가 포함됩니다. (복지 및 기관법 제 5985(d)(3)조항.)